

# [상법강의교안 집중강의 보조자료]

## -2020년 법무사대비 상법판례 자료-

-하영태 박사 제공-

### <제공일정>

▣자료 I : 상법강의교안(하영태저: 2019년 초판) 정오표=>20년 2월 제공

▣자료 II : 2018년(전체) ox최신판례지문=>20년 2월 제공

▣자료 III : 2019년(전체) ox최신판례지문=>20년 2월 제공

▣자료 IV : 2020년(상반기) ox최신판례지문=>20년 5월 제공

※최신판례해설: 문제집강의(3월26일)와 최종정리특강(6월3일)

### ▣자료 I : 법무사 상법강의교안(하영태저: 초판1쇄) 정오표

-도서출판 무지개 제공-

면수	수정전	수정후
33면(표)	익명조합=>예고(영업연도 말 ->2개월 전)	익명조합=>예고(영업연도 말 ->6개월 전)
50면(위에서 3줄)	태와(설립사무종사),	대내(설립사무종사),
64면(위에서 10줄)	질권자의 청구->	질권설정자의 청구->
78면(위에서 1~4줄)	<p>■ 책임면제(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충실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li> <li>□ 고의·중과실로 손해발생</li> <li>□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li> </ul>	<p>■ 책임면제(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충실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판)</li> </ul> <p>■ 책임감면(O): 정관=&gt;이사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하는 금액)/ 사외이사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 초과하는 금액)</p> <p>■ 책임감면(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중과실로 손해발생</li> <li>□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li> </ul>

		회사 간의 거래
78면(위에서 4줄)	■면제금액: 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하는 금액). 사외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 초과하는 금액)	전체삭제
81면(위에서 4줄)	회사가 퇴직한~	회사가 퇴직한~
87면(위에서 3줄)	효력이 발행한~	효력이 발생한~
91면(위에서 6줄)	실권주의 발생:	실권사채의 발생:
92면(표)	설립->설립무효의 소(O)	설립->설립무효의 소(O)
	이사->사원총회의 승인(O)	이사->사원총회의 승인(O)
	감사->임의기관(X)	감사->필수기관(X)
93면(아래에서 7줄)	보험자: 특약(X)->자급받고~	보험자: 특약(X)->보험료 지급받고~
117면(아래에서 6줄)	법인명칭의 기재(O)+대표기관 날인(O)+대표기관의 기명날인 (X)	법인명칭의 기재(O)+법인직 인날인(O)+대표기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X)
119면(위에서 8줄)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의 이자문구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 기출급환어음의 이자문구
119면(아래에서 6줄)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 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환어 음; 확정일 출급환어음
120면(위에서 11줄)	/지급무담보 기재(X)->기재 (O)->무의적 기재사항(O)	/지급무담보 기재(O)->무의 적 기재사항(O)
201면(위에서 5줄)	(O) 위탁매매인의 일반상사유 치권 행사~	(O)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 유치권 행사~
232면(위에서 12줄)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317면(아래에서 4줄)	~주식을 양도한 자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439면(위에서 14줄)	<조문기출>	<판례기출>
454면(아래에서 3줄)	<조문기출>	<판례기출>

-----

**▣자료 II : 2018년(전체) ox판례지문=>20년 2월 제공**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2.28. 2013다26425.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는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4.12. 2016다39897(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조합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정답>(O)

<해설>대판 2018.4.24. 2017다205127.

5.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O)

<해설>대판 2018.4.24. 2017다205127.

6.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O)

<해설>대판 2018.4.24. 2017다205127.

7.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O)

<해설>대판 2018.4.24. 2017다205127.

8.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3. 2015다246186.

9.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0.25. 2016다42800·42817·42824·42831.

10.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0.25. 2016다42800·42817·42824·42831.

11.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0.25. 2016다42800·42817·42824·42831.

12.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규정의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의 규정취지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1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

1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 등)의 보수(퇴직금 등)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 등)의 보수 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사 등)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사 등)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1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

**17.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

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8.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5.30. 2015다51968(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

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0.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 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6.15. 2017다248803, 248810.

21. 가맹점사업자인 갑 등이 가맹본부인 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갑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것은 갑 등과 을 회사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갑 등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6.15. 2017다248803, 248810.

22.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6.15. 2017다248803, 248810(갑 등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을 회사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갑 등에게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3. 이사의 경업금지규정인 상법 제397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

**도록 하려는 데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

**24.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

**25.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

**2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

**27.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8.1. 2017다246739.

**28.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제**

403조)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1.29. 2017다35717.

29.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1.29. 2017다35717.

30. 갑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을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갑 은행과 병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병 회사가 갑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을은 갑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을은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1.29. 2017다35717.

3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7. 2016마272.

32.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7. 2016마272.

33.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7. 2016마272.

34.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7. 2016마272.

35.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을 정할 때,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7. 2016마272.

36.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3. 2015다246186.

37.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3. 2018다244761(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항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8.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O)

<해설>대판 2018.12.13. 2018다244761(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